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3. 12. 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1월 25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12월 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00회 제2차정례회 제5차위원회 (2003. 12. 9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2과장 염 세 동

가. 제안이유

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구세의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여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.(안 제7조)

(※ 종전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면제하였음)

○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임대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일부 감면율을 적용토록 함.(안 제9조)

○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,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함.(안 제20조)

○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함.(현행 제25조)

○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03. 10. 1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같음하여 전문개정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,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3.12.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6.12.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<주요 개정 내용>

○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중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9조제1호에서는 현행 전용면적 40㎡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2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현행규정에는 5년간만 1,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적용기간을 3년간으로 축소하였으며, 현행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은 2002.12.31일로 그 적용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2003. 12. 31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동 조례를 2006. 12. 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· 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·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강면조례안이 3년간 연장이 되면 우리 구청의 이득은 어느 정도 인가?
- 답변요지(영세동 세무2과장) : 현재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[제 100회 제2차정례회] {2003. 12. 2(화) ~ 12. 18(목)}

委員會 審査 參考資料集

〈안건명〉

□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

▶ 기획재정국 세무2과소관

日時 : 2003. 12. 9(화) 10:00

(제5차위원회)

行政建設委員會

專門委員 박관수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

0 동 개정조례안은 2003. 10. 1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같음하여 전문개정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,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3.12.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6.12.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<주요 개정 내용>

0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중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9조제1호에서는 현행 전용면적 40㎡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유기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0 안 제2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현행규정에는 5년간만 1,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적용기간을 3년간으로 축소하였으며, 현행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은 2002.12.31일로 그 적용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0 동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2003. 12. 31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동 조례를 2006. 12. 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· 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·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「마포구세감면조례 전문개정 관련」
신·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사유



마 포 구

현행	개정	
<p>제4조(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 <u>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</u>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	<p>제4조(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 <u>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○상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조문정비</p>
<p>제5조(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~4. (생략)</p> <p>5. <u>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</u></p> <p>6~7. (생략)</p>	<p>제5조(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~4. (생략)</p> <p>5. <u>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</u></p> <p>6~7. (생략)</p>	<p>○상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조문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7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</p> <p>1. 문화재보호법 제4조, 제6조 내지 제8조와 00특별시(광역시)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<u>주거용 부동산</u></p> <p>2.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<u>주거용 건축물</u>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(자치시장)이 따로 지정한 <u>주거용 부동산</u></p> <p>3.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</p>	<p>제7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</p> <p><u>부동산</u></p> <p>2. ----- <u>건축물</u> ----- ----- <u>부동산</u></p> <p>3. ----- ----- -----</p>	<p>○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함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1.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</p> <p>2.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(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,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 <p>3.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한다.</p>	<p>1. -----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3. -----</p>	<p>○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함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9조(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<u>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</u>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 <u>50%</u>를 경감한다.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.</p> <p>1. <u>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</u>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</p> <p>2. <u>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</u>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</p> <p>※ 15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을 조정 가능</p>	<p>제19조(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 ----- ----- <u>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· 제5항 단서</u>의 ----- ----- <u>100분의 50</u>을 ----- -----</p> <p>1. <u>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· 제2호</u> 본문의 규정에 -----</p> <p>2. <u>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· 제3호</u> 본문의 규정에 -----</p> <p>※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, 동조제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을 조정 가능</p>	<p>○상위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조문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5조(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·통보된 건축물(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년도 사업소세를 각각 50% 경감한다. 다만,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·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, 정비완료 당해 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.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<삭제></p>	<p>○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 규정을 삭제함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관련 법령

地方稅法

第7條 (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)

①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必要한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.

第8條 (受益等 事由로 인한 不均一課稅 및 一部課稅)

地方自治團體는 그의 一部에 對하여 特히 利益이 있다고 認定되는 事件에 對하여서는 不均一課稅를 하거나 또는 그의 一部에 對하여서만 課稅할 수 있다.

第9條 (課稅免除等を 爲한 條例)

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·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. <改正 78· 12· 6, 98· 12· 31>

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안 참고법령

문화재보호법

第4條 (寶物·國寶의 指定) ①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有形文化財중 중요한 것을 寶物로 指定할 수 있다. <改正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寶物에 해당하는 文化財중 人類文化의 見地에서 그 價値가 크고 類例가 드문 것을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寶로 指定할 수 있다. <改正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第6條 (史蹟·名勝·天然記念物의 指定)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記念物중 중요한 것을 史蹟·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할 수 있다. <改正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第7條 (重要民俗資料의 指定)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民俗資料중 중요한 것을 重要民俗資料로 指定할 수 있다. <改正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>

第8條 (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) ①文化財廳長은 第4條·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. <改正 1989.12.30, 1993.3.6, 1999.1.29, 1999.5.24, 2000.1.12>

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指定의 적정성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. <신설 2000.1.12>

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검토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. <신설 2000.1.12>

주택법

제10조 (공동사업주체)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.

임대주택법시행령

제9조 (임대주택의 임대유기기간등)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1998.11.13, 2002.9.11, 2003.6.25>

1.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
2.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

※ **조세특례제한법**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, 동조제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을 조정 가능

서울특별시육의광고물통관리조례

제32조(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)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, 미풍양속의 유지,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.

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

제12조 (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)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는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1992.5.30, 1997.2.6, 1999.2.26, 2000.7.1, 2002.12.26>

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
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
3.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
4. 기타 시·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

제32조 (표시방법의 완화) ①시·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0조·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한한다. <개정 1992.5.30, 2001.11.22, 2002.12.26>

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
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
3.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
4.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(제10조제1항제3호·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·지역 등을 제외한다)
5.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

노인복지법

第31條 (老人福祉施設의 종류) 老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.

1. 老人住居福祉施設
2. 老人醫療福祉施設
3. 老人餘暇福祉施設
4. 在家老人福祉施設